

울산광역시 중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문기호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30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2. 11. 11.

발의자 : 문기호, 문희성, 김태욱,
홍영진, 정재환, 이명녀,
김도운, 안영호, 박경흠,
강혜순

1. 제정이유

「국민건강증진법」에 따라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에서 위촉 운영하고 있는 금연지도원의 활동 수당 지급 기준을 현실과 관련 법규에 맞게 변경하고, 공개모집 절차를 의무화하여 위촉절차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금연지도원의 위촉절차의 객관성 확보(안 제10조)
- 나. 금연지도원의 활동 수당 지급 기준 변경(안 제13조)

3. 개정조례안: 따로 붙임

4. 근거법규: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9조의5

5. 참고사항

- 가. 조례안 예고: 2022. 11. 3. ~ 11. 10.(7일간)
- 나.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따로 붙임

울산광역시 중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

울산광역시 중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2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(종전의 제1항) 본문 중 “**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**”을 “**제1항에 따라**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중 “**제2항**”을 “**제3항**”으로 한다.

-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위촉계획을 수립하여 공개모집하여야 한다.
-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 받은 구청장은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위촉대상자로 결정한다.

제13조제1항 본문 중 “**5시간 이상**”을 “**4시간 기준**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금연지도원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금연지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.

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

④ (생략)

제13조(금연지도원의 활동 수당 지급)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(5시간 이상 근무)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, 새벽,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-----.

⑤ (현행 제4항과 같음)

제13조(금연지도원의 활동 수당 지급) ① -----
-----4시간 기준-----

-----.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근거법규

□ 「국민건강증진법」

제9조의5(금연지도원) ①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.

② 금연지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
2.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
3.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
4. 그 밖에 금연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③ 금연지도원은 제2항의 직무를 단독으로 수행하려면 미리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.

④ 금연지도원이 제2항에 따른 직무를 단독으로 수행하는 때에는 승인서와 신분증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.

⑤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한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⑥ 금연지도원은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⑦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금연지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.

1.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격을 상실한 경우

2. 제2항에 따른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그 권한을 남용한 경우
 3. 그 밖에 개인사정,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
- ⑧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 및 교육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울산광역시 중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
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미첨부 근거규정

- 「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제2호

2. 미첨부 사유

-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되거나 이미 시행되어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용추계를 미첨부 함

3. 작성자

- 소 속: 보건과
- 직 급: 지방간호서기
- 이 름: 이혜경
- 연락처: 290-4363